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 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(이충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67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8. 16.

발 의 자: 이충현, 박성호, 홍재희, 박학용,
정정희, 전철규, 신찬호, 이종숙,
한상욱, 김순옥, 김현진, 김지수,
김희동, 김성한, 강선영, 정재봉,
정장훈, 박주선, 최세진

1. 의결주문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강서구 주요 행정행위의 부적정성, 비효율성, 불법, 위법성 행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, 조치함으로써 강서구정혁신을 도모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1.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사항 등 2. 각종 민간 위탁 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, 낭비적 행정 및 기타 부적정하거나 불법, 위법성이 있는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, 조치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 하고, 조치, 혁신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강서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제64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혁신 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□ 설치목적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제64조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등에 따라 주요 행정행위의 부적정성, 비효율성, 절차상 위법성 등에 대하여 조사, 조치하는 등으로 강서구청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위원구성

- 위원회 정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□ 위원선임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조사특별위원회는 구 의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(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5항).
- 필요시 5명이내의 외부 전문가(건축사, 변호사 등)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(자문료 지급)
-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'강서구청 혁신'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.

□ 활동기간

-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혁신 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(안)

(단위:천원)

구 분	산출내역	예산액
위원장활동비 (위원회업무추진비)	●	1,400
건축사자문료 (의견서포함)	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함	
변호사자문료 (의견서포함)		
총 합계		1,400

※ 운영위, 본회의 통과 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함.

【관계법령】

《지방자치법》

-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**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-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《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》

- 제9조(특별위원회)**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, 위원구성, 활동기간(최장 6개월 이내) 활동내용,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《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》

- 제3조(행정사무조사)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해야 한다.
-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조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안건을 부쳐야 한다.
-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, 조사방법, 조사일정,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.
-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
- ⑥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즉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.